

정보보호대학원 석·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

2007년 9월 1일 제정

2011년 3월 1일 개정

2019년 12월 일 개정

<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>

- 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함) 시행세칙에서 정한 석·박사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함)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용어정의) 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 및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.
- 제 3 조 (운영유형) 통합과정의 운영유형은 본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추가로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.
- 제 4 조 (정원) ① 통합과정 정원은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로 ~~따로~~ 정한다.
- ② 통합과정 제 3(4)학기로 입학하는 정원은 연박사정원 중 해당년도 미선발, 자퇴 및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여석으로 산정한다.
- 제 5 조 (선발) ① 통합과정 제1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국내·외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외국 정규학교 16년과정 이수자 포함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·후기 입학시험에서 선발한다.
- ② 통합과정 제3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학기 재학 12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5이상으로 취득(또는 취득예정)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및 7월에 실시한다.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선발한다.
- ③ 통합과정 제 4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3학기 재학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5이상으로 취득(또는 취득 예정)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및 7월에 실시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선발한다.
- ④ 통합과정 3(4)학기로 진입예정인 자가 당해 학기 성적확정 후 선발자격에 미달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.
- 제 6 조 (수업연한 및 학점취득) ①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, 학점취득은 교과학점 54학점 및 연구지도 16학점(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12학점 이상)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② 제3학기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제1항의 수업연한 및 학점취득 산정에는 석사과정 이수학과와 취득 교과학점 및 연구지도학점을 포함한다.
- ③ 수업연한 4년중 교과학점 54학점 이상과 연구지도학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수업연한 단축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단축범위는 1년 또는 1학기로 하며, 5학기말 또는 6학기말에 신청한다.
 2. 단축대상은 6학기 또는 7학기의 전체 평점평균이 4.0 이상이며,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- 제 7 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) ①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. 다만, 군복무(의무복무) 및 출산 휴학,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② 석사과정 2학기 이수후 입학한 학생은 통합과정 입학전 석사과정 2학기 기간을

포함한다.

제 8 조 (중도포기 및 중도탈락)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자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

② 중도탈락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내에 본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.

③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사운영내규의 석사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 9 조 (학사관리) ①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준용한다.

② 교과과정 이수,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,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과 본 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사운영내규에 규정된 박사과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.

제 10조 (외국어시험) 외국어 시험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6조에 따른다.

제 11조 (종합시험 응시자격) ①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, 교과학점 30학점 이상 취득 및 평균평점 3.0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위 제1항의 등록 및 교과학점 등은 기이수 석사과정 2학기를 포함하여 산정한다.

③ 종합시험은 본 대학원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준하여 시행한다.

제 12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①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8학기 이상 등록한 자
2. 교과목 5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한 자(또는 취득 예정자)
3. 연구지도학점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(또는 취득예정자)
4. 선수과목 이수자일 경우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(또는 이수 예정자)
5.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

②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6학기 이상 등록한 자
2. 교과목 5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4.0 이상으로 취득한 자(또는 취득 예정자)
3. 연구지도학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(또는 취득 예정자)
4. 선수과목 이수자일 경우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(또는 이수 예정자)
5.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
6.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
제 13조 (학위과정 구분) 학위과정 구분은 4학기 이수, 교과학점 24학점, 연구지도학점 8학점 이하는 석사과정, 초과이수 및 취득은 박사과정 학생으로 구분하여, 학기단위로 운영(1학기~8학기)한다.

제 14조 (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)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구분하여 석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석사과정 학생에 준하여 선발 및 지급할 수 있다.

제 15조 (준용)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과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시행세칙과 학사운영 내규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라 규정명칭을 ‘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석·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’에서 ‘정보보호대학원 석·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’로 변경함)

부 칙

이 내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 4조, 제5조 개정)